

황태자 가례 관련 한글 문헌의 종류와 용도*

The Types and Uses of Hangeul Manuscripts
Related to the Crown Prince's Auspicious Ceremony

金 奉 佐 (Kim, Bong Jwa)**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황태자비 관례를 돕는 한글 문헌 |
| 2. 황태자 가례와 문헌의 제작 | 4. 한글 문헌의 용도 |
| 3. 한글 문헌의 종류와 내용 | 5. 결 론 |
| 3.1 황태자 혼례를 돕는 한글 문헌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대한제국의 황태자 이척(李坫, 훗날의 純宗)이 새로운 황태자비 윤씨를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한글 문헌에 관한 연구이다. 혼례와 관련된 한글 문헌은 책문(冊文) 1건, 홀기(笏記) 8건, 발기(件記) 10건이며, 황태자비 윤씨의 관례와 관련된 한글 문헌은 축사(祝辭) 1건, 홀기 5건, 발기 1건으로 총 26건이 현전한다. 본고에서는 한글 문헌들을 중심으로 개별 문헌의 형태와 내용, 의례 등의 기록을 통해 제작 배경 및 용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황태자비 윤씨가 참여하는 의례를 중심으로 한글 문헌이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보조하는 실무자 내인들의 의례 진행 및 준비를 돕는 목적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문·축사·홀기는 내인들의 의례 진행 및 낭독을 돕는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발기는 의례 전후 내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각종 물품의 내역서로서 활용되었다.

要語: 대한제국, 황태자, 황태자비, 가례, 혼례, 관례, 한글 문헌, 책문, 의주, 홀기, 발기, 축사, 내인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hangeul manuscripts which were produced during the wedding ceremony of Crown Prince Yi Cheok, later King Sunjong, to the new crown princess Yun and her coming-of-age ceremony. A total of 26 extant hangeul manuscripts are examined: 1 investiture letter, 8 portable records of ritual protocols, and 10 item lists related to the wedding ceremony, and 1 letter of felicitation, 5 portable records of ritual protocols, and 1 item list related to Crown Princess Yun's coming-of-age ceremony. The production background and purpose of each hangeul manuscript are examined in terms of its physical form, contents, and records contained in royal protocols. Hence, it can be verified that these hangeul manuscripts were specially produced to assist court servants, female court servants in particular, who participated in the rituals in which Crown Princess Yun was involved to proceed and prepare for the rituals. Female court servants used the investiture letter, letter of felicitation, and portable records of ritual protocols aids in proceeding with the rituals or to announce the procedures of the ceremony; item lists were used as detailed records of preparing various items before and after the ceremony.

Key words: Korean Empire, Crown Prince, Crown Princess, Auspicious Ceremony, Wedding Ceremony, Coming-of-age Ceremony, Hangeul Manuscripts, Investiture Letter, Explanation of the Ritual, Potable Record of Ritual Protocol, Item List, Letter of Felicitation, Female Court Servant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서각 자료 연구 - 대한제국기 자료 연구(2)> 사업의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문학박사(likecho@naver.com)

투고일: 2020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5일
서지학연구, 제82집, 141-171,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141>

1. 서론

고종은 1897년 9월 17일(양력 10월 12일)에 황제로 즉위한 뒤 다음 날 황제 즉위 사실과 국호(國號) ‘대한(大韓)’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¹⁾ 이에 따라 왕세자 이척(李坻, 1874~1926)은 황태자, 왕세자빈 민씨는 황태자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1904년 9월 28일(양력 11월 5일)에 황태자비 민씨가 세상을 뜨면서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새 황태자비를 맞이하는 혼례를 준비해야 했다.

황태자 혼례의 절차는 대한제국의 전례서 『대한예전(大韓禮典)』에 ‘황태자납비의(皇太子納妃儀)’로 정비된 바 있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납채(納采) · 비씨가납채(妃氏家納采), 납징(納徵) · 비씨가납징(妃氏家納徵), 고기(告期) · 비씨가고기(妃氏家告期), 책비(冊妃) · 비수책(妃受冊), 임헌초계(臨軒醮戒), 친영(親迎), 동뢰(同牢), 조현(朝見) 등으로,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³⁾와 크게 다르지 않다. 1882년(고종 19)의 왕세자 혼례와 비교한 기존 연구에서도 ‘황태자비’와 같이 대한제국의 성립에 따라 바뀐 관청명, 관직명 등의 명칭들만 다를 뿐 내용적인 차이는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⁴⁾

그러나 실제로 거행된 황태자 혼례의 절차는 『대한예전』에 수록된 의주(儀註)와 달랐다. 당시 황태자 혼례에 관한 기록물인 『황태자가례도감의궤(皇太子嘉禮都監儀軌)』와 『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에 따르면, 납채문명(納采問名) · 황태자비가수납채문명(皇太子妃家受納采問名), 납길(納吉) · 황태자비가수납길(皇太子妃家受納吉), 납징(納徵) · 황태자비가수납징(皇太子妃家受納徵), 고기(告期) · 황태자비가수고기(皇太子妃家受告期), 책비봉영(冊妃奉迎) · 황태자비수책예궐(皇太子妃受冊詣闕), 동뢰(同牢), 조현(朝見) 등으로 이전의 왕세자 혼례와는 확연하게 다른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납채와 함께 신부의 가계를 묻는 ‘문명’의 절차, 길일을 정하여 알리는 ‘납길’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태자가 황태자비를 직접 모셔오는 ‘친영(親迎)’이 아니라 사자(使者)를 보내어 모셔오는 ‘봉영(奉迎)’으로 바뀐에 따라 친영을 떠나는 황태자에게 황제가 경계의 말을 하는 ‘임헌초계의(臨軒醮戒儀)’도 생략되었다. 왕세자 혼례와는 다른 새로운 절차를 정립한 것이다.

황태자 가례의 일정은, 1906년(광무 10) 2월 22일(양력 3월 16일) 금혼령(禁婚令), 5월 13일(양력 7월 4일) 초간택(初揀擇), 8월 5일(음력 9월 22일) 재간택(再揀擇), 11월 16일(양력 12월 31일) 삼간택(三揀擇)을 거쳐 윤택영(尹澤榮)의 딸을 황태자비로 간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11월 24일(양력 1907년 1월 8일) 손시(巽時: 오전8시반~9시반)에 납채 · 문명, 11월 27일(양력 1월 11일) 손시에 납길, 11월 28일(양력 1월 12일) 손시에 납징, 12월 10일(양력 1월 23일) 정시(丁時: 12시반~13시반)에 고기, 12월 11일(양력 1월 24일) 병시(丙時: 오전10시반~11시반)에 책비례를 거행한

1) 『高宗實錄』 34년(1897) 양력 10월 12일; 양력 10월 13일.

2) 『大韓禮典』 卷9, 嘉禮, 皇太子納妃儀.

3) 『國朝五禮儀』 卷4, 嘉禮, 王世子納嬪儀.

4) 장병인,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인의례,” 『한국사연구』 161(2013. 6), 159.

뒤 황태자비를 경운궁(慶運宮, 현재의 德壽宮)으로 모셔왔다. 그리고 같은 날 11일 곤시(坤時: 14시 반~15시반)에 함녕전(咸寧殿)에서 동퇴연, 경시(庚時: 16시반~17시반)에 조현례를 거행하였다. 후속 의례로 12월 13일(양력 1월 26일) 정시(丁時)에는 관례(盥饋禮), 12월 14일(양력 1월 27일) 정시에는 진하의(陳賀儀), 선원전 및 경효전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12월 19일(양력 2월 1일) 미시(未時: 13시반~14시반)에는 함녕전에서 황태자비의 관례(冠禮)를 거행하였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혼례와 함께 황태자비 관례까지 치러야 했으므로, 각 의례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보조 도구가 필요했다. 즉, 의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기록한 의주 및 홀기를 비롯하여 실제 의례 현장에서 직접 주고받는 제서·답표·책문 등 다양한 유형의 문헌들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각 문헌의 제작 과정과 소용 물품 등은 『황태자가례도감의궤』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실물로 전하는 것은 의궤를 포함하여 33건에 불과하다. 이 중 26건이 한글 필사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장서각에 현전하는 한글 문헌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용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황태자 가례를 위해 제작된 각종 문헌들의 종류와 제작 과정 등을 개괄함으로써 현전하는 한글 문헌들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별 한글 문헌들을 해당 의례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기 다른 유형으로 제작된 문헌들의 실질적인 용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황태자 가례와 문헌의 제작

황태자 혼례의 거행을 위해 가장 먼저 제작한 문헌은 의주(儀註)이다. 의주는 의례의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을 가리킨다.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에 각종 도구들을 설치하고 참여 인원들의 자리를 배치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비롯하여 본 의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 절차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906년(광무 10) 2월 22일(양력 3월 16일)에 황태자의 혼례 준비를 명하였는데, 당시 『가례등록(嘉禮謄錄)』이 온진치 않아 『예조등록(禮曹謄錄)』을 참조하여 의주를 마련하도록 하였다.⁵⁾ 이에 따라 11월 23일(양력 12월 16일)에 납채·문명, 납길, 납징, 고기, 책보 내입·내출, 책비봉영의에 대한 의주 각 1도(度), 황태자비가에서 납채·문명, 납길, 납징, 고기를 받는 의주 각 1도, 황태자비수 책예궐·동퇴·조현례·관례·외선온에 대한 의주 각 1도를 마련하였고,⁶⁾ 11월 28일(양력 12월 21일)에는 황태자비가 황태자에게 절을 올리는 의례에 대한 의주 1도를 마련하여 황제와 황태자에게 각각 올렸다.⁷⁾

5)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2月22日.

6)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11月23日.

황태자 혼례를 위해 제작된 의주는 총 20건이었다. 『황태자가례도감의궤』에는 황제를 위한 어람(御覽) 건과 황태자를 위한 예람(睿覽) 건을 제작하는 데에 소용된 물품의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어람 의주(御覽儀註) 20건과 예람 의주(睿覽儀註) 20건을 정서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

상품도련지(上品壽鍊紙) 매 건당 5장, 제목감[題目次] 황선자지(黃扇子紙) 2장, 봉과(封裹) 황정주(黃鼎紬) 4폭 보자기 3건 · 홍정주(紅鼎紬) 4폭 보자기 3건, 황 · 홍가함(黃紅假函) 각 3척(隻)⁸⁾

위의 기록을 통해 어람 및 예람용 의주는 상품도련지(上品壽鍊紙)를 사용하여 만들되, 표지의 제목(題目)은 황색 선자지(扇子紙)에 써서 붙이는 형태로 동일하게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주를 포장하는 보자기와 상자는 달랐는데, 어람용은 황색 정주(鼎紬)로 만든 4폭 보자기로 싸서 황색 가함(假函)에 넣었으며, 예람용은 홍색 정주로 만든 4폭 보자기로 싸서 홍색 가함에 넣어 각각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작된 의주는 모두 실물이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황태자가례도감의궤』와 『황태자가례 의주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궤에는 16건, 의주등록에는 20건으로, 두 문헌에 수록된 의주의 목록이 조금 다르다. 즉, ‘납채 · 문명’부터 ‘관례의’까지 15건의 의주는 두 문헌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외선온의’ 1건이 의궤에만 있고 의주등록에는 없다. 그리고 의주등록에는 ‘황태자 비회궁에황태자행례의’, ‘황태자가례청경친립반조진하의’, ‘선원전경효전황제황태자전배황태자비묘현례시출환궁의’, ‘선원전경효전황제황태자전배황태자비묘현례의’, ‘선원전경효전황태자비묘현례의’ 5건을 더하여 총 20건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두 종의 문헌에 수록된 의주를 합치면 총 21건이나, 황태자비만을 위한 의주 ‘선원전경효전황태자비묘현례의’를 제외하면 20건으로 볼 수 있다.

의주를 마련한 뒤에는 이를 바탕으로 홀기(笏記)를 제작하였다. 홀기는 의례의 주요 진행 절차를 기록한 문서로서 실제 의례를 거행하는 현장에서 낭독용 대본으로 쓰였다.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홀(笏)과 같은 형태로서 관원이 임금을 알현할 때 보고할 사항을 간단히 적어서 들고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황태자 혼례를 위해 제작된 홀기는 의주와 마찬가지로 총 20건이었다. 이 또한 황제를 위한 어람용과 황태자를 위한 예람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으며, 그 소용 물품의 내역을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람(御覽) 및 예람(睿覽) 홀기 각 20건의 정서(正書)에 들어가는 물품

상품도련지(上品壽鍊紙) 매 건당 5장, 표지감[衣次] 황화화주(黃禾花紬) 길이6치 · 너비4치 2편(片), 후협감[後挾次] 홍화화주(紅禾花紬) 길이6치 · 너비1치 1편, 제목감[題目次] 백화화주(白禾花紬) 길이5치 · 너비1치 1편, 홍화화주 길이6치 · 너비4치 2편, 후협감 초록화화주 길이6치 · 너비1치 1편, 제목감 백화화주 길이5치 · 너비1치 1편, 봉과(封裹) 황정주(黃鼎紬) 3폭 보자기 3건 · 홍정주(紅鼎紬) 3폭 보자기 3건, 황 · 홍가함(黃紅假函) 각 3척(隻)⁹⁾

7)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11月28日.

8)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所, 丙午7月初5日.

9)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所, 丙午7月初5日.

의주와 비교하면, 상품도련지로 만든 내지(內紙)나 보자기 및 상자를 만드는 재료는 동일하나 표지의 장황(粧潢)이 다르다. 어람용 홀기는 황색 화화주(禾花紬) 표지에 홍색 화화주로 서배(書背)를 감쌌으며, 예람용 홀기는 홍색 화화주 표지에 초록 화화주로 서배를 감쌌다. 그리고 제목은 모두 흰색 화화주로 꾸몄다.

홀기는 황제와 황태자뿐만 아니라 황태자비 이하 각 차비관(差備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도 제작되었다. 의례에 따르면, 황태자비를 비롯하여 여관(女官), 여령(女伶)을 위한 홀기가 각 10건, 내입(內入)용 한자 및 한글본 홀기가 12건, 각 차비를 위한 홀기가 40건이 제작하였으며, 모두 예람용과 같은 물품으로 길이 6치, 너비 4치의 크기로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길이 4치, 너비 2치5푼으로 조금 더 작은 크기의 홀기도 제작하였는데, 어람용과 예람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4건을 만들었다. 이는 설화지(雪花紙)로 내지를 만든 점이 다르다.¹⁰⁾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홀기들이 다수 제작되었으나, 실물로는 한글 필사본 8건만 전한다. 한자본의 내용 또한 『황태자가례의주등록』에 ‘선원전묘현례홀기’, ‘경효전행례홀기’ 2건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의주나 홀기와 달리 본 의례에서 주고받는 용도로 제작되는 문헌도 있다. 황제가 황태자비의 본가에 내리는 제서(制書)와 이에 대한 본가의 답표(答表), 황태자비를 책봉하는 내용의 책문(冊文)이 대표적이다.

제서(制書)는 혼주(婚主)인 황제가 황태자비 본가의 주인(主人)에게 사자(使者)를 통해 전달하는 문서로서 혼례의 세부 절차에 따라 각각의 예를 청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서를 받은 황태자비 본가의 주인이 답례로 올리는 문서가 답표(答表)이다. 제서와 답표는 납채·문명·납길·납징·고기·책비봉영의 6건의 의례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서식은 의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채 때의 제서와 답표의 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制書【用紙, 答表同.】

皇帝曰, 咨某官某, 帝王立嫡, 尤重擇配, 宗祧所托王化, 則基率導舊章. 今使某官某·某官某持節, 以禮納采, 欽哉故諭.
光武十一年一月八日

答表

某官臣某稽首頓首上言. 欽惟皇帝陛下嘉命, 訪昏陋族, 備數采擇臣之女, 未閑教訓, 方祇保傳, 欽承舊章, 肅奉典制. 臣稽首頓首再拜承制詔.
光武十一年一月八日, 某官臣某謹上.

위와 같은 서식으로 제서는 홍문관에서 지은 글을 가례도감에서 정서한 뒤 비서감에서 어보(御寶)를 찍어서 제작하였으며, 답표는 가례도감에서 정서하여 본가에 미리 들여 보냈다. 용지는 모두 자문지(咨文紙)를 사용하였는데, 제서의 경우 황색의 자문지를 썼다.¹²⁾ 당시 제작된 제서와 답표는

10)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所, 丙午7月初5日.

11)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 納采問名儀.

모두 그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책문(冊文)은 황대자비를 책봉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당시 의례에서는 천은(天銀)을 도금(鍍金)하여 만든 금책(金冊)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왕세자비 책봉 죽책(竹冊)에 대응되는 의물(儀物)이다. 책문의 제작은 글을 짓는 제술관(製述官)과 글자를 쓰는 서사관(書寫官)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제술관은 궁내부특진관 민영규(閔泳奎), 서사관은 중추원의장 민종묵(閔種默)이었다.¹³⁾ 책문은 실제 의례를 위해 제작하는 의물과는 별도로 그 내용의 열람과 보관을 목적으로 필사본과 탁인본(拓印本)도 제작하였는데, 그 소용 물품의 내역을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⁴⁾

금책문의 한자 및 한글본[眞謄書] 각 1건에 들어가는 물품

출초감[出草次] 초주지(草注紙) 2장, 정서감[正書次] 도련지(搗鍊紙) 2장, 황필 · 참먹 각 1, 가함(假函) 1부(部), 홍주(紅紬) 3폭 보(袂) 1건, 표지감[衣次] 초록수주(草綠水紬) 길이7치 · 너비6치 4편(片), 후격감[後隔次] 홍수주(紅水紬) 길이7치 · 너비8치 2편, 제목감[題目次] 백수주(白水紬) 길이4치 · 너비1치 2편

금책문 탁인본[印出]에 들어가는 물품

참먹 3동(同), 분당지(粉唐紙) 2권5장, 백모자(白帽子) · 자모자(紫帽子) 각 15립(立), 벼루[大硯] 6면(面), 백지(白紙) 3권, 수건포(手巾布) 16자, 거핵면화(去核綿花) 1근8냥, 방문리(方文里) 6개, 목휘장(木揮帳) 3건, 황밀(黃蜜) 6냥(兩)

금책문 장첩(粧貼) 2건에 매 건당 들어가는 물품

분당지(粉唐紙) · 모면지(毛面紙) · 상품도련지(上品搗鍊紙) 각 3장, 백지(白紙) 10장, 상하공장감[上下空張次] 모면지 반반장(半半張), 회장감[回粧次] 남수주(藍水紬) 길이1자 · 너비1치 8편(片), 배접감[褙接次] 백지 3장, 표지감[合衣次] 홍수주(紅水紬) 길이8치 · 너비 6치 14편, 황수주(黃水紬) 길이8치 · 너비6치 8편, 후협감[後挾次] 수주(水紬) 길이8치 · 너비1치<초록 7편/홍색 4편>, 제목감[題目次] 백수주(白水紬) 길이4치 · 너비1치 11편, 협감[挾次] 수주(水紬) 길이4치 · 너비5푼<홍색 4편/황색 7편>, 황 · 홍주(黃紅紬) 3폭 보(袂) 각 2건, 황 · 홍가함(黃紅假函) 각 2척(隻), 후추[胡椒] · 소치(小腦) 각 2냥, 교말(膠末) 7되

금책문 장첩(粧貼) 분아건(分兒件) 16건에 매 건당 들어가는 물품

분당지 · 모면지 각 3장, 백면지(白綿紙) 6장, 백지 · 박백지(薄白紙) 각 10장, 남궁전지(藍宮箋紙) 1장반, 초록궁전지(草綠宮箋紙) 반장, 후협감[後挾次] 홍주(紅紬) 길이8치 · 너비1치 1편, 합유지(合油紙) 5장, 교말(膠末) 1말[斗], 소목(燒木) 5단

필사본은 ‘진언서(眞謄書)’ 즉 한자본과 한글본 각 1건을 만들었는데, 초주지(草注紙)로 출초본(出草本)을 작성한 뒤 도련지(搗鍊紙)로 정서본(正書本)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초록색 수주(水紬)

- 12)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八禮時舉行：納采問名. **制書紙二張【黃咨文紙】** ○ 制書, 弘文館製進, 奏下都監, 都監正書, 進呈秘書監, 秘書監安寶, 正日早朝, 秘書監丞奉詣中和殿內, 奉安行禮後, 正副使陪進. 納吉 · 納徵 · 告期 · 奉迎同. 【內裏黃輕光紬三幅袂袱二件, 外裏黃鼎紬六幅單袱二件. 尙方造作.】, …, **答表紙二張【咨文紙】** ○ 都監正書, 先納本家. 【表副紙二張【咨文紙. 粧貼黃三八紬衣. 都監正書, 先納本家.】, 黃漆函二部【長兩尺, 廣一尺二寸, 高三寸五分, 內外裏黃鼎紬四幅單袱四件, 黃絨絲金箋紙具, 內塗黃鼎紬.】, …
- 13)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5月27日.
- 14)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 丙午7月初10日.

표지에 홍색 수주로 서배를 감싸 장황(粧潢)하였다. 이 때 정서본은 서사관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탁인본은 의물로 만든 금책에 종이를 밀착시킨 뒤 먹으로 찍어낸 것으로, 의궤에는 ‘인출(印出)’로 표현되어 있다. 그 제작에 소용된 물품의 내역을 통해 황제와 황태자를 위한 내입건(內入件) 2건과 궁내부대신 등 주요 관원에게 나누어주는 분아건(分兒件) 16건으로 구분 제작하였으며,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물품으로 장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제작된 필사본 및 탁인본은 현재 각 1건이 전한다.

이외에 황태자 혼례에 소용된 각종 물품들의 내역을 알 수 있는 발기(件記)가 있다. 발기는 인명, 물품명, 음식명 등을 그 수량과 함께 낱낱이 열거한 기록물을 가리킨다.¹⁵⁾ 발기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의궤나 등록 등의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실물로 전하는 문헌의 형태와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황태자 혼례와 관련해서는 한자본 3건, 한글본 10건이 현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태자의 혼례와 관련하여 의주, 홀기, 제서, 답표, 책문, 발기의 형태로 다양한 문헌들이 제작되었으며, 모두 의례 진행에 직접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황태자 혼례 관련 문헌의 종류와 수량

세부절차	의주	홀기	제서/답표	책문	발기
납채·문명의	의궤(2)/등록(2)	-	의궤(2)	-	-
납길의	의궤(2)/등록(2)	-	의궤(1)	-	-
납징의	의궤(2)/등록(2)	-	의궤(1)	-	-
고기의	의궤(2)/등록(2)	-	의궤(1)	-	-
책보내입·내출의	의궤(2)/등록(2)	-	-	-	-
책비봉영의/ 황태자비수책예궐의	의궤(2)/등록(2)	한글필사본(1)	의궤(1)	탁인본(1) /한글필사본(1)	-
동뢰의	의궤(1)/등록(1)	한글필사본(1)	-	-	-
조현의	의궤(1)/등록(1)	한글필사본(1)	-	-	-
관계의	의궤(1)/등록(1)	한글필사본(1)	-	-	-
황태자비회궁 예황태자행례의	등록(1)	한글필사본(1)	-	-	-
외선온의	의궤(1)	-	-	-	-
진하의	등록(1)	-	-	-	-
묘현례의	등록(3)	등록(2) /한글필사본(3)	-	-	-
기타	-	-	-	-	한자필사본(3) /한글필사본(10)
	의궤(16) /등록(20)	등록(2) /한글필사본(8)	의궤(6)	탁인본(1) /한글필사본(1)	한자필사본(3) /한글필사본(10)

* () : 수량 / 밑줄 : 실물 현전본

15) 발기(件記)는 물품의 가짓수를 헤아리는 ‘발’에서 파생한 용어로서 한글로는 ‘발기’, 한자로는 ‘件記’로 표기된다. 발기의 명칭을 비롯하여 각각의 내용, 제작 배경, 자료적 특성 등에 대해서는 김봉좌(2016)에서 연구한 바 있다.

『황태자가례도감의궤』와 『황태자가례의주등록』에 의주, 홀기, 제서, 답표가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실물로는 홀기, 책문, 발기가 전하고 있다. 실물로 현전하는 문헌들을 형태별로 나누어보면 탁인본 1건(책문), 한자 필사본 3건(발기), 한글 필사본 19건(홀기/책문/발기)이 있다.

혼례가 끝난 뒤에는 황태자비 윤씨의 관례가 곧바로 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혼례와 마찬가지로 세부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홀기, 축사, 발기가 제작되었다.

<표 2> 황태자비 관례 관련 문헌의 종류와 수량

의례	홀기	축사	발기
관례	등록(1)/ <u>한글필사본(1)</u>	<u>한글필사본(1)</u>	-
조알례	등록(1)/ <u>한글필사본(1)</u>	-	한자필사본(1)/한글필사본(1)
수명부행례	등록(1)/ <u>한글필사본(1)</u>	-	-
묘현례	등록(2)/ <u>한글필사본(2)</u>	-	-
	등록(5)/ <u>한글필사본(5)</u>	<u>한글필사본(1)</u>	<u>한자필사본(1)/한글필사본(1)</u>

* () : 수량 / 밑줄 : 실물 현전본

홀기는 5건의 의례가 『황태자가례의주등록』에 수록되어 있는데,¹⁶⁾ 이에 대응되는 한글 필사본이 모두 현전한다. 그리고 축사 1건, 발기 2건이 있다. 앞서의 혼례 관련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한글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태자 가례를 위해 제작된 문헌은 『황태자가례도감의궤』와 『황태자가례의주등록』을 포함하여 총 33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 중 26건이 한글 필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용도를 살펴봄으로써 유독 한글로 표기된 문헌들이 다수 현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한글 문헌의 종류와 내용

3.1 황태자 혼례를 돕는 한글 문헌

황태자비를 맞이하는 혼례는 납채·문명의(納采問名儀), 납길의(納吉儀), 납징의(納徵儀), 고기의(告期儀), 책비봉영의(冊妃奉迎儀), 황태자비수책예궐의(皇太子妃受冊詣闕儀), 동뢰의(同牢儀), 조현의(朝見儀), 관궤의(盥饋儀), 황태자비회궁예황태자행례의(皇太子妃回宮詣皇太子行禮儀), 외

16) 『皇太子嘉禮儀註臚錄』, 皇太子妃冠禮笏記; 皇太子妃冠禮後朝謁笏記; 皇太子妃冠禮後受命婦行禮笏記; 皇太子妃冠禮後塔源殿展謁笏記; 皇太子妃冠禮後景孝殿展拜笏記.

선은의(外宣醞儀), 진하의(陳賀儀), 묘현례의(廟見禮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황태자비수책예궐의, 동뢰의, 조현의, 관궐의, 황태자비회궁예황태자행례의, 묘현례의 6종의 의례와 관련된 홀기 및 책문이 한글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데, 모두 황태자비가 등장하는 의례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의례에는 황태자비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곧 한글 필사본의 제작이 황태자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당 의례를 중심으로 각 문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06년 12월 11일(양력 1907년 1월 24일) 오전, 경운궁 중화전에서 제서(制書)와 책보(冊寶)를 사자(使者)에게 내려 황태자비를 모셔오도록 명하는 ‘책비봉영의’가 거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사(正使) 의정부의정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궁내부특진관 김병익(金炳翊)이 제서를 비롯하여 책함(冊函), 보록(寶籙), 명의대함(命衣櫛函)을 요여(腰輿)와 채여(彩輿)에 싣고서 황태자비가 머물고 있는 안국동 별궁으로 갔다. 그리고 상전(尙傳)을 통하여 책함과 보록을 별궁 안으로 들인 뒤 황태자비가 책보를 받는 ‘황태자비수책예궐의’를 거행하였다.

한글 홀기 「황태자비수책예궐홀기(皇太子妃受冊詣闕笏記)」¹⁷⁾는 상전이 정사에게서 책함과 보록을 받아 각각 안(案)에 올려두면 황태자비가 부모(傅姆)의 인도로 나오는 데서 시작한다. 의주와 달리 의식 장소와 각종 기물들을 정비하는 준비 과정을 비롯하여 주인이 사자를 맞이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황태자비가 직접 등장하는 의식 절차만을 발췌하여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독책여관(讀冊女官)과 독보여관(讀寶女官)이 각각 책문(冊文)과 보문(寶文)을 읽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의궤에는 없고 의주등록에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 슈측, 궤계청, 스비, [격] 황태자비, 스비,
- 슈측, 계청궤, [격] 황태자비, 궤,
- 독[격]최녀관, 진궤, 기함독[격]최, [홀이[격]최환치어함]
- 독[격]보녀관, 진궤, 기록독[격]보, [홀이[격]보환치어록]
- 장서궐, [격]칙함, 슈, 슈측, 슈측, 북향궤슈, 흥, 진
황태자비전, 남향궤슈, [격] 황태자비,
- 황태자비, 슈, 이슈슈궐, 슈궐궤슈, 립어좌,¹⁸⁾

守則跪啓請四拜, 皇太子妃四拜. 掌書稱有制. 守則啓請跪, 皇太子妃跪. 守則進掌書前, 北向跪受冊函興, 進皇太子妃前, 南向跪授皇太子妃, 皇太子妃受, 以授守閣, 守閣跪受, 立於左.¹⁹⁾

守則跪啓請四拜, 皇太子妃四拜. 守則啓請跪, 皇太子妃跪. 讀冊女官進跪, 開函讀冊. 訖, 以冊還置於函. 讀寶女官進跪, 開盒讀寶. 訖, 以寶還置於盒. 掌書取冊函授守則, 守則北向跪受興, 進皇太子妃前, 南向跪授皇太子妃, 皇太子妃受, 以授守閣, 跪受立於左.²⁰⁾

17) 「황태자비수책예궐홀기(皇太子妃受冊詣闕笏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745)

18) 「황태자비수책예궐홀기」: ‘■’은 홀기 상단의 붉은색 띠지 표시, ‘.’은 붉은색 구두점 표시, ‘[격]’은 글자 간의 공백을 두는 ‘격자(隔字)’ 표시, ‘[]’은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쓴 부분 표시.

19)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 妃氏家受冊詣闕儀.

20) 「皇太子嘉禮儀註謄錄」, 皇太子妃受冊詣闕儀.

황태자비가 적의(翟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얹어 나오면 수칙(守則)²¹⁾이 ‘사배(四拜)’를 아뢰어 황태자비가 네 번 절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나, 뒤이어 황태자비가 책보(冊寶)를 받는 부분이 다르다. 홀기와 등록의 의주에는 독책여관이 책함을 열어 책문을 읽고, 독보여관이 보록을 열어 보문을 읽은 뒤 다시 넣어두는 절차가 있는데, 의계의 의주에는 누락되어 있다. 수칙이 장서(掌書)²²⁾로부터 책함과 보록을 받아 황태자비에게 주고, 황태자비는 이를 받아서 수규(守閨)²³⁾에게 주는 절차 등의 마무리는 동일하다.

책보를 받는 의식이 끝나면 황태자비는 들어가고, 정사가 제서와 기러기를 본가의 주인에게 내리고 주인이 답표를 올리는 의식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한글 홀기에 없다. 한글 홀기에는 이후 황태자비가 다시 밖으로 나와 연(輦)에 오르는 과정이 나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자가 상전을 통해 “좋은 달 좋은 날에 아무개 등이 직무를 수행하여 봉영(奉迎)합니다.”라는 말을 수칙에게 전하고, 수칙이 황태자비에게 아뢰면 황태자비가 네 번 절한다. 이에 주인은 “경계하고 경계하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삼가서 혹시라도 명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며, 어머니는 “힘쓰고 힘써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기지 말라.”라고 하며, 서모는 “부모의 말씀을 공손히 들어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황태자비가 연에 올라 경(景)을 입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한글 홀기에는 황태자비가 참여하는 의례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용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황태자비수책예궐의’에서 주요 의물로 등장하는 금책은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으나, 현전하는 한글 필사본과 탁인본을 통해 그 형태와 내용을 알 수 있다.

한글 필사본 책문²⁴⁾은 세로 28cm, 가로 8cm 크기의 첩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앞뒤 겉면은 붉은 색 비단으로 감싸 표지를 만들었으며, 앞표지 상단 좌측에는 금색 테두리의 흰색 비단의 제첩(題籤)을 붙였다. 제첩 중앙에는 붓글씨로 ‘冊封皇太子妃尹氏竹冊文(國文)’, 그 오른쪽 상단에는 ‘光武十年丙午十二月十一日’이 부기되어 있다. 본문은 총 10행 18자로 3면이나 금책을 인출한 탁인본²⁵⁾을 보면 2면 구성이 원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글자를 쓰는 공간에는 붉은 인찰선을 그었는데, 위아래 테두리는 굵은 선, 행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가는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극행(極行)이 있으면 한 행에 18자, 평행(平行)은 16자를 썼는데, ‘황제(皇帝)’를 2자 높여 쓰는 대두(擡頭) 외에 행을 바꾸거나 글자를 띄는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내용은 황태자비에게 금책을 하사하는 날짜와 황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자 혹은 4자의 구절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황태자는 나라의 근본으로 배필을 두어 인륜을 두텁게 하니, 종묘의 제사를 잘 받들고 부부 사이가 화락하게 하며, 황태자를 잘 섬기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의정부의정 조병호와 궁내부특진관 김병익을 보내어 황태자비로 책봉함을 천명하였다.²⁶⁾

21) 수칙(守則): 황태자궁에 소속된 중6품 내명부의 궁관직. 예의(禮儀)와 기거(起居)를 담당한다.

22) 장서(掌書): 황태자궁에 소속된 중8품 내명부의 궁관직. 문서 출입 및 계품(啓稟)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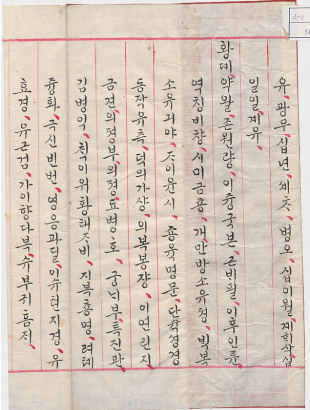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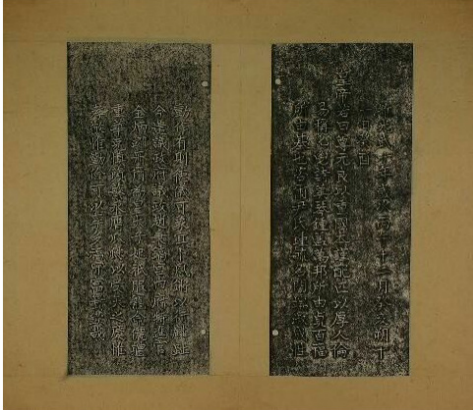
23) 수규(守閨): 황태자궁에 소속된 중6품 내명부의 궁관직. 황태자비의 인도를 담당한다.

24) 『冊封皇太子妃尹氏冊文』(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고문서 788)

25) 『皇太子妃冊封文』(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654-4)

본문에는 홀기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빗점 형태의 구두점이 다수 찍혀 있는데, 문장의 ‘구절’ 단위뿐만 아니라 날짜나 호칭·직명·인명 등의 고유명사에도 찍어서 그 간격이 짧다. 예를 들면, ‘유, 광무, 십년, 세초, 병오, 십이월, 계희삭, 십일일, 계유, 황태, 약왈, (維光武十年歲次丙午十二月癸亥朔十一日癸酉, 皇帝若曰)’이나 ‘금견, 의정부, 의정, 도병호, 궁니부, 특진관, 김병익, (今遣議政府議政趙秉鎬·宮內府特進官金炳翊)’과 같이 문장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구두점이 많다. 따라서 낭독용 대본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황태자비책봉문의 한글 필사본과 탁인본

한글 필사본	탁인본
	
유, 광무, 십년, 세초, 병오, 십이월, 계희삭, 십일일, 계유. 황태, 약왈, 존원량, 이중국본, 근비필, 이후인륜. 역칭비창, 시미금중, 개, 만방소유정, 빅복 소유과야, 지이운시, 종육명문, 단숙성성 동작유측, 덕의가상, 의복봉장, 이연린지. 금견, 의정부, 의정, 도병호, 궁니부, 특진관. 김병익, 최이위 황태자비, 지복총명, 러테 중화, 극신빈번, 영응과달, 이수턴지경, 유 효경, 유근검, 가이향다복, 슈부귀흠지.	維光武十年歲次丙午十二月癸亥朔十一日癸酉 皇帝若曰尊元良以重國本謹配匹以厚人倫 易稱匕鬯詩美琴鍾蓋萬邦所由貞百福 所由基也咨爾尹氏鍾毓名門端淑成性 動作有則德儀可象宜卜鳳縵以衍麟趾 今遣議政府議政趙秉鎬宮內府特進官 金炳翊冊爾爲皇太子妃祗服寵命儼體 重華克慎蘋蘩永膺瓜瓞以受天之慶惟 孝敬惟勤儉可以享多福守富貴欽哉

안국동 별궁에서 의례를 마치고 경운궁으로 들어온 황태자비는, 당일 오후 2시 반 즈음 함녕전에 서 황태자와 서로 절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는 동퇴연을 치렀고, 4시 반에는 황제를 뵈고 절을 올리는 조현례를 거행하였다. 이 때 1882년(고종 19) 혼례와 달리 대비나 중전이 없었으므로 황제에게만 인사를 올렸다. 이를 뒤 13일 오후에는 황태자비가 마련한 음식을 먹는 관례례, 14일 오전에는 선원전과 경효전에 절을 올리는 묘현례를 거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의례 거행을 돕기 위해 제작된 한글

26)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金冊文.

홀기는, 앞서 살펴본 『황태즈비슈칙예궐홀기』를 포함하여 모두 8건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현전한다. 각각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혼례 관련 한글 홀기의 서지사항

의례	자료명	수량	크기(세로×가로)	청구기호
황태자비수책예궐의	황태즈비슈칙예궐홀기	1첩(12면)	29.5×9.2cm	K2-2745
동뢰의	동뢰홀기	1첩(12면)	29.5×9.4cm	K2-2638
조현의	황태즈비도현홀기	1첩(10면)	29.5×9.4cm	K2-2744
황태자비회궁 예황태자행례의	황태즈비회궁예황태즈행례홀기	1첩(4면)	29.0×9.3cm	K2-2746
관계의	관계홀기	1첩(10면)	29.5×9.4cm	K2-2617
묘현례의	선원단묘현례홀기	1첩(14면)	28.8×9.4cm	K2-2457
	경효단묘현례홀기	1첩(4면)	28.4×9.4cm	K2-2415
	경효단행례홀기	1첩(8면)	29.0×9.3cm	K2-2421

홀기의 외형을 비교해보면, 세로는 28.4~29.5cm, 가로는 9.2~9.4cm의 첩 형태로 크게 차이가 없다. 표지나 내지의 형태 또한 동일하다. 앞뒤 겉면은 붉은색 비단, 서배는 초록색 비단, 제침은 흰색 비단으로 표지를 꾸몄으며, 내지는 붉은 인찰선으로 위아래 테두리는 굵은 선을, 행간은 가는 선을 그었다. 본문은 한 글자를 내려쓰는 것을 평행(平行)으로 하여 한 행에 하나의 짧은 단락을 썼는데,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마다 상단 여백에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긴 형태의 붉은색 띠지를 붙였다. 또 본문 가운데 ‘황태즈비’, ‘칙(冊)’, ‘궐(闕)’, ‘보(寶)’ 등의 특별한 글자 앞에는 공경의 의미로 한 글자를 띄어 썼으며, 붉은색 빗점 형태의 구두점을 많이 찍었다. 구두점의 위치는 문장의 해석상 끊어 읽을 만한 ‘구궐’ 단위뿐만 아니라 ‘황태즈비’, ‘슈칙(守則)’과 같은 직명 뒤에도 찍어서 1자~5자 단위로 그 간격이 짧다.

한글본 홀기는 의주와 달리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를 정비하고 각종 기물의 진설 위치 및 방향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모두 생략되어 있고, 황태자비가 직접 거동하는 의식만을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각 홀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뢰홀기(同牢笏記)』는 경운궁으로 들어온 황태자비가 함녕전에서 황태자와 서로 절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는 동뢰연²⁷⁾에 관한 것이다. 황태자비가 대궐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막차(幕次)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궐가 ‘내엄(內嚴)’을 아뢰면 황태자가 나와 자리에 오르고, 수칙의 청으로 황태자비가 나와서 수궐의 인도에 따라 궁정 서쪽에 동향으로 선다. 수칙이 ‘외비(外備)’를 아뢰면 황태자가 내려와서 홀을 잡고 황태자비 앞에 나아가 읍례(揖禮)를 한 뒤 먼저 들어온다. 이에 황태자비도 수궐의 인도로 따라 들어온 뒤 수칙의 청으로 두 번 절하면 황태자도 답배한다.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차례로 자리에 나아가면 장찬(掌饌)이 찬탁을 진설하고, 황태자와 황태자비에

27)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 同牢儀; 『皇太子嘉禮儀註膳錄』, 同牢儀.

게 각각 술잔을 올린다. 황태자는 수칙의 청으로 홀을 놓은 뒤 술잔을 받는다.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제주(祭酒)하고 마시고 나면 장찬이 탕을 올린다. 이와 같이 세 차례 술을 마시고 나면 수칙이 ‘예필(禮畢)’을 아뢰다. 황태자는 수칙의 청으로 다시 홀을 잡고, 황태자비와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각각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위막(帷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도 1> 황태자 혼례 관련 한글 홀기

『황태자비도현홀기(皇太子妃朝見笏記)』는 동퇴연이 끝난 뒤에 황태자비가 황제를 뵙고 절을 올리는 조현례²⁸⁾에 관한 내용이다. 의주에는 동퇴연은 동궁, 조현례는 내전에서 거행하여 황태자비가 연을 타고 이동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함녕전에서 동퇴연에 이어 곧바로 조현례를 거행하였으므로, 홀기에는 황태자비의 이동 절차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홀기는 수규의 인도로 황태자비가 서상(西廂)에 이르러 동쪽을 향해 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전이 ‘외판(外辦)’을 아뢰면 황제가 나와 자리에 오르고, 황태자비가 전빈(典賓)²⁹⁾의 인도로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사찬(司贊)의 말을 받아 전찬(典贊)³⁰⁾이 ‘사배’라 창하면 황태자비가 네 번 절하고 전빈의 인도로 어좌 앞에 나아가 대추와 밤 쟁반을 받들어 안(案)에 놓는다. 황제가 이를 어루만지면 상식이 동쪽으로 거두고, 황태자비는 전빈의 인도로 배위로 돌아가 네 번 절한다. 상식이 술잔을 올리면 황태자비가 제주하고 맛본 뒤 잔을 상식에게 주고 부복하고 일어나 네 번 절한다. 상의(尙儀)가 ‘예필’을 아뢰면 황제가 돌아가시고, 황태자비도 수규의 인도로 동궁으로 돌아간다.

28)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 皇太子妃朝見儀; 『皇太子嘉禮儀註膳錄』, 皇太子妃朝見禮儀.

29) 전빈(典賓): 황태자비궁에 소속된 정7품 내명부의 궁관직. 예의(禮儀)와 기거(起居)를 담당한다.

30) 전찬(典贊): 황태자비궁에 소속된 정8품 내명부의 궁관직. 예의(禮儀)와 기거(起居)를 담당한다.

『황태자비회궁예황태자행례홀기(皇太子妃回宮詣皇太子行禮笏記)』는 황태자비가 동궁으로 돌아가 황태자에게 절을 올리는 의례³¹⁾에 관한 내용이다. 의주는 등록에만 수록되어 있고, 의궤에는 없다. 홀기는 사찬·전빈·전찬이 자리에 나아가고, 수칙이 ‘내엄’과 ‘외비’를 아뢰어 황태자비가 수규의 인도로 나오는 데서 시작한다. 황태자가 나와 자리에 오르면 황태자비가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한다. 수칙이 ‘예필’을 아뢰면 황태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들어간다. 황태자비가 수규의 인도로 자리에 오르면 내명부와 여관들이 배위로 나아가 사배례를 행한다. 그리고 황태자비가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관례홀기(盥饋笏記)』는 혼례 후 사흘째 되는 아침에 황태자비가 황제에게 음식을 올리는 관례³²⁾에 관한 것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면 신부가 손을 씻고 음식을 올린다(舅姑入于室, 婦盥饋.).”라고 한 의식과 동일하다. 준비 과정을 비롯하여 황태자비가 연을 타고 내전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묘사된 의주와 달리 홀기는 황태자비가 수규의 인도로 함문으로 들어가 서상(西廂)에서 기다리는 데서 시작한다. 황제가 나와 어좌에 오르면 황태자비가 전빈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간다. 사찬의 말을 받아 전찬이 ‘사배’라 창하면 황태자비가 네 번 절하고 전빈의 인도로 어좌 앞에 나아가 음식을 받들어 안(案)에 놓는다. 황제가 진선(進膳)을 마치면 상식이 동쪽으로 거두고, 황태자비는 전빈의 인도로 배위로 돌아가 네 번 절한다. 황태자비가 자리에 나아가면 상식이 음식을 올린다. 황태자비가 진선을 마치면 상식이 거둔다. 전찬의 창에 따라 황태자비가 부복하고 일어나 네 번 절하고 전빈의 인도로 나간다. 상의가 ‘예필’을 아뢰면 황제가 대내로 돌아가시고, 황태자비도 수규의 인도로 동궁으로 돌아간다.

『선원전묘현례홀기(璿源殿廟見禮笏記)』는 혼례 후 나흘째 되는 날 12월 14일(양력 1월 27일)에 황제, 황태자, 황태자비가 선원전에 전배하는 의례의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의주 등록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³³⁾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던 궁궐 내의 진전(眞殿)으로, 왕의 거처에 따라 창덕궁과 경복궁에 이어 1897년(고종 34) 경운궁에도 건립되었다.³⁴⁾ 본래 영조·정조·순조·익종·헌종의 어진을 봉안한 6실 규모로 운영하였으나, 1899년(광무 3) 제1실에 태조 어진을 봉안하면서 7실로 바뀌었다.³⁵⁾ 이에 따라 황태자 혼례 당시의 묘현례는 제1실부터 제7실까지 차례로 향과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황태자비는 수규, 황태자는 수칙, 황제는 상궁의 인도로 각각 배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국궁사배홍평신’ 즉 몸을 굽혔다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 선원전 내에 들어가 봉심(奉審)한 뒤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문 밖으로 나가고, 황제만 상궁의 인도를 받으며 제1실부터 제7실까지 차례로 향과 술잔을 세 차례 올린다. 그리고 황제가

31) 『皇太子嘉禮儀註膳錄』, 皇太子妃回宮詣皇太子行禮儀.

32)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 盥饋儀; 『皇太子嘉禮儀註膳錄』, 盥饋儀.

33) 『皇太子嘉禮儀註膳錄』, 璿源殿廟見禮笏記.

34) 『高宗實錄』 34년(1897) 6월 19일(양력).

35) 『高宗實錄』 36년(1899) 12월 131일(양력).

상궁의 인도로 문 밖으로 나오면 ‘국궁사배홍평신’ 후에 각각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경효던묘현례홀기(景孝殿廟見禮笏記)』와 『경효던형례홀기(景孝殿行禮笏記)』는 황태자비가 명성황후 민씨의 신위를 모신 경효전에 나아가 전배하는 의례의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³⁶⁾ 의주에 따르면, 경효전 밖의 배위(拜位)에서 황제, 황태자, 종친, 문무백관이 차례로 절을 올린 뒤에 황태자비가 뒤이어 배위에 나아가 절을 올렸다. 그리고 황제, 황태자, 황태자비가 경효전 안으로 들어가서 향과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의식 절차 가운데 『경효던묘현례홀기』는 경효전 밖에서 황태자비가 절하는 부분만을 기록한 것이며, 『경효던형례홀기』는 경효전 안에서 황제·황태자·황태자비가 거행한 의식 전체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06년의 황태자 가례에서는 경운궁 내의 선원전과 경효전에서만 묘현례를 거행하였다. 1882년 왕세자 혼례 때 종묘를 비롯하여 영녕전과 경모궁에서 묘현례를 거행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당시 일본의 위력에 불안을 느껴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한 뒤 궐 밖 출입을 제한했던 고종황제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태자의 혼례에 소용된 각종 물품들의 내역을 알 수 있는 발기(件記)들도 현전하고 있다. 한글로 표기된 발기가 10건, 한자본이 3건 전한다. 발기의 겉면에는 ‘병오십이월가례시’, ‘병오가례시’, ‘병오십이월십일일가례시’, ‘병오십이월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 ‘丙午嘉禮時’, ‘丙午十二月十一日册妃教是時’와 같이 황태자가 혼례를 치렀던 연도의 간지 혹은 연월일을 쓰고 ‘가례’를 명시하였다. 개별 발기의 자료명과 크기 등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 혼례 관련 발기의 서지사항

내용	자료명	크기(세로×가로)	청구기호
복식	병오십이월가례시 상감마마 의디 불기	27.0×44.5cm	【972】 ³⁷⁾
	병오십이월가례시 천만세동궁마마 의디 불기	27.2×47.3cm	【973】
	병오십이월가례시 영친왕 의복 불기	27.0×45.0cm	【1046】
	병오십이월가례시 마마 의디 불기	27.2×62.0cm	【971】
	병오십이월가례시 군부인 의복 불기	27.0×56.3cm	【1067】
	병오가례시 자중 불기	24.0×210.0cm	【1864】
	尙方司 太子宮嘉禮教是時 衣衾次 件記	28.6×15.1cm	K2-2728
기물	병오가례시 노리게 퀘 민돌니온 불기	23.0×25.0cm	【1240】
	병오가례시 보 불기	23.5×38.0cm	【1208】
	丙午嘉禮時 嬪宮媽媽 盤龍胸襟四次眞珠絙眞珠環子輦方席屏風繡 發記	24.0×197.0cm	【1222】
음식	병오십이월십일일 가례시 진어상 불기	27.2×90.0cm	【1341】
	丙午十二月十一日册妃教是時 件記	35.0×737.0cm	【1860】
상격	병오십이월 천만세 동궁마마가례시 즈비관 너인 상격주오신 불기	24.0×352.0cm	【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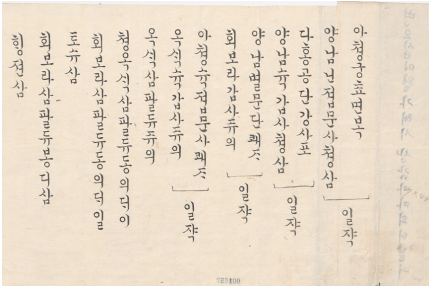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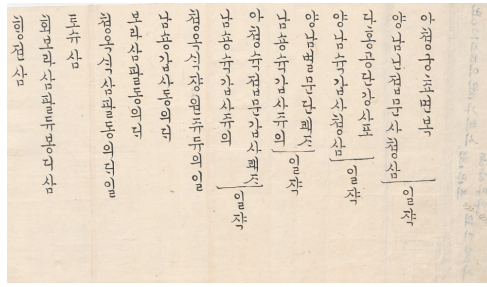
36) 『皇太子嘉禮儀註膳錄』, 璿源殿景孝殿皇帝皇太子展拜皇太子妃廟見禮時出還宮儀; 璿源殿景孝殿皇帝 皇太子展拜皇太子妃廟見禮儀; 璿源殿景孝殿皇太子妃廟見禮儀; 景孝殿行禮笏記.

37) 장서각 소장 왕실 발기들은 왕실고문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련의 숫자로만 이루어진 청구기호가 부여되어 있다. 개별 자료의 청구기호는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발기는 앞서 살펴본 홀기나 책문처럼 첩장(帖裝)이 아니라 날장 혹은 선장(線裝)의 형태이다. 대부분 날장으로 가로 737cm의 발기【1860】과 같이 길게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방사(尙方司) 태자궁가례시 의대감 발기(太子宮嘉禮敎是時衣襪次件記)』와 같이 책자 형태로 꾸민 것도 있다.

기록 주제로 분류해보면 복식 7건, 기물 3건, 음식 2건, 차비관 상격 1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 주제에 따라 개별 발기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식과 관계된 발기는 겉면에 ‘상감마마 의디’, ‘천만세동궁마마 의디’, ‘마마 의디’, ‘영친왕 의복’, ‘군부인 의복’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황제·황태자·황귀비 엄씨의 의대, 영친왕 및 연원군부인 김씨의 의복 내역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 중 황제와 황태자의 의대 내역은 그 구성이 비슷하여 서로 비교해 볼 만하다.

황제 의대	황태자 의대
	

<도 2> 황제 및 황태자 의대 발기

아청궁초면복(鴨靑宮綃冕服)과 양남인접문사청삼(洋藍鱗櫟紋紗靑衫), 다홍공단강사포(多紅貢緞絳紗袍)와 양남숙갑사청삼(洋藍熟甲紗靑衫), 양남별문단쾌자(洋藍別紋緞快子), 아청숙접문사쾌자(鴨靑熟櫟紋紗快子), 토수(吐手), 회보라삼팔주봉지(灰甫羅三八紬奉只), 행진(行纏)의 조합은 동일하다. 다만 주의(周衣)와 동의대(胴衣襪)의 색상 및 옷감이 서로 다르다. 황제는 쾌자(快子)와 함께 입는 옷으로 회보라갑사주의(灰甫羅甲紗周衣)와 옥색숙갑사주의(玉色熟甲紗周衣)를 구성한 반면, 황태자는 남송숙갑사주의(藍松熟甲紗周衣)로 통일하였다. 또 황제의 옥색삼팔주주의(玉色三八紬周衣)에 대응하여 황태자는 청옥색장원주주의(靑玉色壯元紬周衣)를 입었다. 동의대는 황제가 청옥색삼팔주(靑玉色三八紬)와 회보라삼팔주(灰甫羅三八紬)로 만든 것을 입었던 반면에 황태자는 남송갑사(藍松甲紗), 보라삼팔주(甫羅三八紬), 청옥색삼팔주로 조금 다르다. 즉, 황제는 주의와 동의대를 옥색과 회보라색의 옷감으로 하였고, 황태자는 남송과 청옥색의 옷감으로 구성하였다.

황태자의 복식은 『황태자가례도감의궤』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직물의 색상이나 종류는 명시되어

본고에서는 각 자료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와 같이 청구기호로 명시하고자 한다.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범복은 면복(冕服) 1건, 평천관(平天冠) 1부, 적말(赤襪) 1건, 적석(赤舄) 1부, 강사포(絳紗袍) 1건, 원유관(遠遊冠) 1부와 같이 복식의 종류만 간략하게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³⁸⁾

『병오가례시 자중 발기』<발기【1864】>에는 황태자비의 머리 장신구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자중(資粧)’은 여성의 몸단장에 쓰는 물건들을 일컫는다. 내용을 살펴보면, ‘슈식 칠보’, ‘가리마리 칠보’, ‘큰마리 칠보’, ‘도짐 칠보’로 머리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장신구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비녀[도금후봉잠·옥선봉잠·도금선봉잠·옥장잠·도금용잠·도금모란오두잠·도금민오두잠 등], 반자[옥원반자·옥점반자·옥대여반자·댕기반자 등], 진주동곳, 옥걸보전, 옥옥모가른보전, 옥판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혼례의 각종 기물(器物)을 기록한 발기에는 장신구 보관용 궤(櫃), 물품 포장용 보자기, 흥배, 방석, 병풍, 신발 등 다양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병오가례시 노리개 궤 만들니온 불기』<발기【1240】>는 노리개 등 각종 장신구를 보관할 수 있는 궤를 만들도록 주문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이다.³⁹⁾ 비녀궤(대·중·소) 170개, 선봉잠궤 6쌍, 진주낭자궤 6쌍, 반자궤 100개, 도병지환궤 130개, 노리개궤(대·중·소) 270개, 채화족도리궤 15개로 다양한 용도의 궤들이 열거되어 있다.

『병오가례시 보 불기』<발기【1208】>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자기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직물의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단가, 총액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백저(白苧)로 만든 보자기는 6폭 11벌, 5폭 5벌, 4폭 3벌, 3폭 4벌, 분홍저포(粉紅苧布)로 만든 보자기는 4폭 2벌, 3폭 1벌, 2폭반 2벌, 백양목(白楊木)으로 만든 보자기는 3폭 12벌이 제작되었으며, 총 9,710냥의 금액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보자기의 수량 단위 ‘벌’은 현대의 수량 단위 명사 ‘벌’의 옛 표기이다. 각종 예물을 싸거나 덮는 용도로 홍목(紅木) 보자기를 제작한 기록은 의궤에서 찾을 수 있으나,⁴⁰⁾ 본 발기에 기록된 백저, 분홍저포, 백양목 등으로 만든 보자기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어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한자본 발기【1222】는 겉면에 명기된 대로 황태자비의 반룡흥배(盤龍胸褙), 진주선(眞珠綰), 진주낭자(眞珠娘子), 연방석(輦方席), 병풍(屏風) 등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제에 명기된 물품 외에도 베개[枕], 수저주머니[匙箸囊], 향낭[香囊], 온혜(溫鞋)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글본 발기는 없으나, 당시 가례를 위해 제작된 물품의 범위를 짐작하게 한다.

혼례 때 올린 상차림 내역을 알 수 있는 발기로는 한글본과 한자본이 각 1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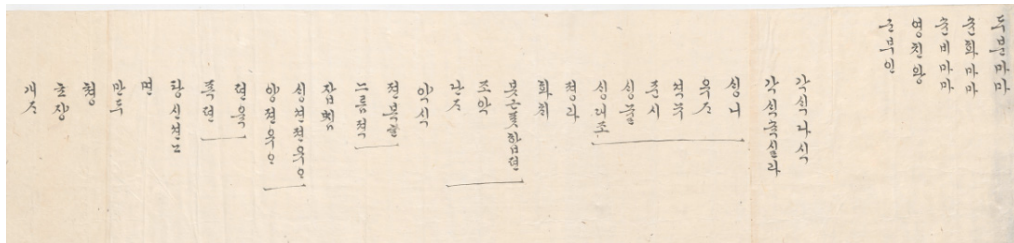
『병오십이월십일일 가례시 진어상 불기』<발기【1341】>는 황제와 황태자를 비롯한 황실 구성원

38)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尙方司.

39) 표제명의 ‘만들니온’은 궤 제작을 지시하는 문구로 볼 수 있다. ‘만들니-’는 ‘만들-’의 사동형으로, ‘만들게 하신(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기의 표제명은 ‘노리개 보관용 궤를 만들게 하신 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궤를 제작한 뒤 그 내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작을 지시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0)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丙午7月27日.

에게 올리는 음식상의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두 분 마마/순화마마/순비마마/영친왕/군부인’과 같이 그 대상이 명기되어 있다. ‘두 분 마마’는 고종황제와 황태자, ‘순화마마’는 순화궁(順和宮) 경빈 김씨(1832~1907), ‘순비마마’는 순헌황귀비 엄씨(1854~1911), ‘군부인’은 의친왕의 부인 연원군부인 김씨를 가리킨다. 내용을 살펴보면, 27가지 음식들을 17개의 그릇에 담은 음식상 6상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언제 올린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음식은 각종 다식, 각종 과일, 배·유자·석류·곶감·밤·대추⁴¹⁾, 정과, 화채, 복은팔합편·조약·단자, 약밥, 전복초·느름적, 잡짬, 생선전유어·양전유어, 편육·죽편, 탕신선로, 면, 만두, 꿀, 초장, 겨자가 열거되어 있다.



<도 3> 음식 발기

한자본 발기【1860】은 겉면에 표제가 따로 없고, 본문에 ‘丙午十二月十一日 冊妃敎是時’, ‘嘉禮敎是時’ 등으로 명시하여 1906년 황태자 가례 때 마련한 상차림 내역으로 짐작하게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책비례 때 올리는 9상의 23그릇 음식들과 상화(床花) 내역, 가례 때 황제·황태자·황태자비 3상에 올리는 48그릇의 음식들과 상화 내역, 순화궁·경선궁·영친왕·군부인 4상에 올리는 31그릇의 음식들과 상화 내역, 가례 당일 야담(夜啖)·다음날 12일 조반(早飯)·13일 조반·14일 조반 각 3상에 올리는 27그릇의 음식들과 상화 내역, 12일 야담·13일 야담 각 3상에 올리는 25그릇의 음식들과 상화 내역이 열거되어 있다.

가례를 거행할 때 차비관으로서 참여한 내인들에게 상전(賞典)으로 하사한 직물의 내역에 관한 발기도 있다. 『병오십이월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즈비관 너인 상격주오신 불기』<발기【1609】>에는 내인들의 다양한 역할과 그에 따른 상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 내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서 인원수와 겸임 내역도 헤아릴 수 있다.

내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전도(前導), 노연승차비(爐烟升差備), 시위(侍衛), 향차비(香差備), 홀기차비(笏記差備), 독책차비(讀冊差備), 동서창차비(東西唱差備), 수식차비(首飾差備), 나주차비(羅珠差備), 의장차비(儀仗差備), 남여차비(藍輿差備) 등과 같이 차비관의 직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도·시위·나주·의장·남여차비 등은 황태자비 등의 거동과 관계된 것이며, 노연승·향·홀

41) 발기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하나의 그릇에 담은 경우 선을 그어 묶음 표시를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음식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서 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기·독책·동서창·수식차비는 의례의 진행과 관계된 것이다. 각 차비에 해당하는 내인들은 복회, 현회, 회일이 등과 같이 성은 없고 이름만 열거되어 있다. 향차비의 경우에는 운현궁, 경우궁, 선희궁, 육상궁, 의친왕궁 등과 같이 내인들이 소속된 각 궁의 이름도 부기되어 있다. 상전은 삼팔주(三八紬), 수화주(水禾紬), 저포(苧布), 양사(洋紗), 목(木), 포(布) 등의 직물로서 각 차비관의 기여도에 따라 직물의 종류와 수량을 달리 하였다.

3.2 황태자비 관례를 돕는 한글 문헌

황태자비 윤씨는 혼례를 마친 뒤 12월 19일(양력 2월 1일) 미시(未時: 13시반~14시반)에 함녕전에서 관례를 올렸다. 당시 나이 13세였다. 황태자비 민씨가 1882년(고종 19) 2월 11세에 혼례를 치른 뒤 1887년(고종 24) 1월 27일 16세에 관례를 치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른 편이었다.

당시 관례의 구체적인 절차는 『황태자가례의주등록』에 수록된 홀기 5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례의 본 의식에 해당하는 삼가례(三加禮)가 거행되었으며, 후속 의례로는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는 조알례(朝謁禮), 명부(命婦)의 인사를 받는 수명부행례(受命婦行禮), 선원전과 경효전에 전배하는 묘현례가 거행되었다. 이와 같은 홀기의 내용은 현전하는 한글본 홀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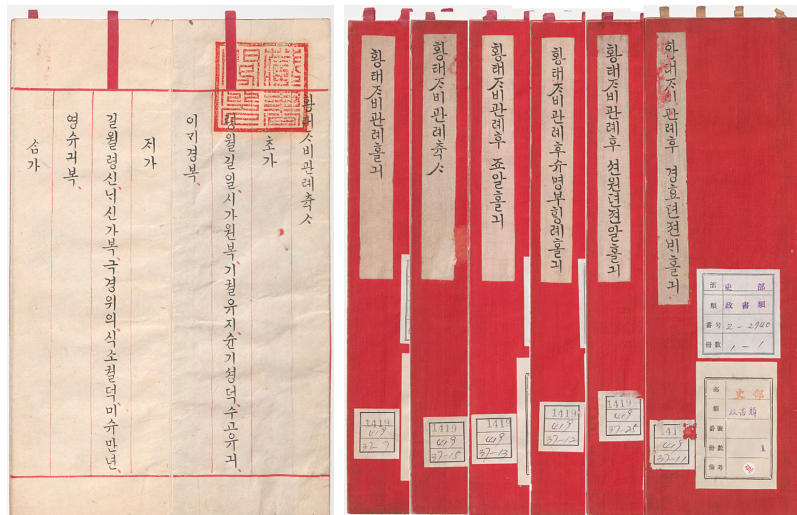
황태자비 관례와 관련하여 제작된 문헌은 한글본 홀기 5건을 비롯하여 한글본 축사 1건, 한글본 및 한자본 받기 각 1건이 현전한다. 총 8건 중 한글 필사본이 7건으로 그 비중이 높다. 앞서 혼례 관련 문헌들 중 다수의 한글 필사본이 황태자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례에 국한하여 제작된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6> 황태자비 관례 관련 문헌의 서지사항

의례	자료명	수량	크기(세로×가로)	청구기호
관례	황태자비 관례 홀기	1첩(6면)	29.0×9.3cm	K2-2739
	황태자비 관례 축스	1첩(4면)	29.0×9.4cm	K2-2738
조알례	황태자비 관례 후 조알 홀기	1첩(4면)	29.0×9.4cm	K2-2743
	병오십이월십구일 태자비 관례 후 묘알시 각차비관 볼기	1장	29.0×85.0cm	【1657】
	丙午十二月十九日 冠禮敎是時	1장	37.0×290.0cm	【1798】
수명부행례	황태자비 관례 후 수명부행례 홀기	1첩(4면)	29.0×9.4cm	K2-2742
묘현례	황태자비 관례 후 선원전 전알 홀기	1첩(6면)	29.0×9.3cm	K2-2741
	황태자비 관례 후 경효전 전비 홀기	1첩(8면)	29.5×9.4cm	K2-2740

개별 문헌의 외형을 살펴보면 홀기와 축사는 첩장, 받기는 일반적인 낱장 형태이다. 특히 홀기 및 축사의 첩장은 그 크기나 형태, 표지를 꾸민 직물의 종류, 내지의 인찰선과 띠지, 본문의 격자 및 구두점 등 주요 특징적인 부분들이 앞서 살펴본 혼례 관련 홀기의 형태와 완전히 일치한다.

표제를 쓴 한글 서체까지 같다. 혼례 시기와 그리 멀지 않으므로, 동일인이 혼례 및 관례 관련 한글 필사본을 함께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4> 황태자비 관례 관련 한글 축사와 홀기

황태자비 관례의 본 의식은 한글본 홀기와 축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태자비 관례 홀기(皇太子妃冠禮笄記)』는 황태자비에게 초가관(初加冠), 재가관(再加冠), 삼가관(三加冠)을 차례로 씌우는 삼가례(三加禮)의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초가례는 황태자비가 수궁(守閨)의 인도로 동서(東序)에 들어가 예복(禮服)을 갖추어 입고, 관석(冠席)에 나와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에 앉는 것으로 시작한다. 상궁(尙宮)이 초가관을 받아서 황태자비 앞에 나아가 축사(祝辭)를 읽고 관(冠)을 씌우면 황태자비는 동서에 들어가 초가관에 맞는 예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세 차례 행하였는데, 각각의 관과 예복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왕세자나 황태자의 관례에 관한 의주와 왕실 여성의 관례 복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왕세자는 초가에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황태자는 강사포(絳紗袍)를 입었으며, 재가에 왕세자 및 황태자는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 삼가에 왕세자는 면류관(冕旒冠)과 면복(冕服)을, 황태자는 면복구장(冕服九章)을 갖추어 입었다.⁴²⁾ 황태자비는 원삼이나 적의를 입었는데, 머리 모양을 바꾼다는 점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 즉, 관례 이전에는 새앙머리와 가래머리, 초가에는 수식, 재가에는 광식(조짐머리), 삼가에는 큰머리로 바꾸었다.⁴³⁾ 발기【1864】에는 ‘슈식 칠보’, ‘가래마리 칠보’, ‘사양’, ‘큰마리 칠보’, ‘도짐 칠보’ 등과 같이 머리 모양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한 각종

42) 『王世子嘉禮膳錄』(1882), 王世子冠禮儀.

『大韓禮典』卷9, 嘉禮, 皇太子冠儀.

43) 김소현, “조선 후기 왕실여성의 관례복식 연구,” 『服飾』 제60권 5호(2010. 6), 5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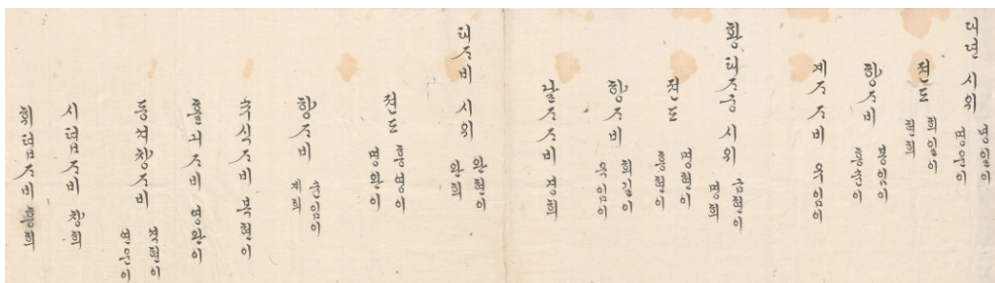
머리 장식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황태자비 윤씨의 관례에 소용된 물품으로 추정된다.

관례를 거행할 때 읽는 축사의 내용은 『황태즈비 관례 축스(皇太子妃冠禮祝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사는 초가, 재가, 삼가에 따라 그 내용이 각기 다른데, 왕세자 및 황태자 관례 때 읽는 축사와 동일하다. 초가에는 ‘좋은 달 좋은 날에 비로소 원복(元服)을 씌우니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인의 덕을 순히 하여 장수를 누려 큰 복을 받으소서.’라 하였고, 재가에는 ‘좋은 달 좋은 날에 가복(嘉服)을 거듭 씌우니 몸가짐을 공경히 하고 덕을 밝히시어 만년토록 장수하여 길이 큰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였다. 삼가에는 ‘좋은 해 좋은 달에 그 관복(冠服)을 다 씌우니 덕을 완성시키고 만수무강하여 하늘의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였다.

관례를 마친 황태자비는 고종황제에게 인사를 올리는 조알례를 거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한글본 홀기 1건, 내인 차비관의 명단을 기록한 한글본 발기 1건, 음식상의 내역을 기록한 한자본 발기 1건이 현전한다.

『황태즈비 관례 후 조알 홀기(皇太子妃冠禮後朝謁笏記)』는 황태자비가 수규의 인도로 서상(西廂)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서는 데서 시작한다. 상의(尙儀)가 외판(外辦)을 아뢰면 황제가 상공의 인도로 익선관과 황포(黃袍)를 입고 자리에 오른다. 이에 황태자비는 수규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 몸을 굽혔다가 네 번 절한 뒤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황제가 나가시면 황태자비도 뒤따라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조알례에 참여한 내인들의 역할과 인원 수는 『병오십이월십구일 태즈비 관례 후 도알시 각 즈비관 불기(丙午十二月十九日太子妃冠禮後朝謁時各差備官件記)』, <발기【16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대던(大殿)’, ‘황태즈궁(皇太子宮)’, ‘태즈비(太子妃)’로 구분하여 황제, 황태자, 황태자비를 보좌한 내인들 총 26명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호위를 담당하는 ‘시위(侍衛)’, 앞에서 인도하는 ‘전도(前導)’, 향을 담당하는 ‘향차비(香差備)’는 각 2명씩 배치되었다. 그리고 황제에게는 ‘계자차비(啓字差備)’, 황태자에게는 ‘달자차비(達字差備)’, 황태자비에게는 ‘수식차비(首飾差備)’로 그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직명의 차비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례의 진행을 담당하는 내인으로 는 홀기차비(笏記差備) 1명, 동서창차비(東西唱差備) 2명, 시점차비(匙牒差備) 1명, 휘점차비(揮牒差備) 1명이 있다. 내인들의 이름은 ‘녕일이’, ‘명운이’, ‘희일이’ 등과 같이 성(姓)이 없다.



<도 5> 조알례 차비관 발기

한자본 발기【1798】은 관례 때 황제·황태자·황태자비에게 올린 음식상의 내역에 관한 것이다. 발기 끝면에 자료 명칭이 없고 본문 앞부분에 ‘丙午十二月十九日 冠禮敎是時’만 명시되어 있으나 황제와 황태자의 등장으로 조알례 때의 것으로 보았다. 황제·황태자·황태자비 3상에 올린 음식은 37그릇으로, 혼례 때의 48그릇에 비하면 그릇 수가 적으나 음식의 종류는 비슷하다. 음식은 열구자탕, 면, 찜, 만두, 떡, 약식, 약과, 다식, 한과, 강정, 과일, 엿, 정과, 편육, 돼지고기, 전유어, 적, 전복초, 해삼전, 전치수, 감회, 수정과, 김치, 꿀, 초장, 겨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조알례가 끝난 뒤에는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명부(命婦)의 절을 받는 의례가 이어졌는데, 이는 『황태자비 관례 후 슈명부행례 홀기(皇太子妃冠禮後受命婦行禮笏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규가 ‘외비(外備)’를 아뢰면 황태자는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서 수칙(守則)의 인도로 나와 자리에 오르 고, 황태자비는 예복을 갖추 입고서 수규의 인도로 나와 자리에 오른다. 그리고 명부(命婦)가 전빈(典賓)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 몸을 굽혔다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한다. 황태자와 황태자 비가 각각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돌아가시면 명부가 전빈의 인도로 나오면서 의식이 끝난다.

관례 이후에도 혼례와 마찬가지로 선원전과 경효전에 나아가 전배하는 묘현례를 거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한글본 홀기 2건은 『황태자비 관례 후 선원전 전알 홀기(皇太子妃冠禮後璿源殿展謁笏記)』, 『황태자비 관례 후 경효전 전비 홀기(皇太子妃冠禮後景孝殿展拜笏記)』로 그 자료명과 같이 전배 대상만 다를 뿐 그 절차는 동일하다.

황태자비가 수규의 인도로 먼저 배위에 나아가면 황태자는 수칙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고, 황제 는 상궁의 인도로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섰다. 황제·황태자·황태자비가 몸을 굽혔다 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한 뒤 황제가 먼저 상궁의 인도로 전내(殿內)에 들어가 봉심(奉審)하였다. 황태자와 황태자비도 뒤따라 들어갔고, 봉심이 끝난 뒤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4. 한글 문헌의 용도

조선 왕실의 관·혼례를 위해 제작된 한글 문헌은 130건이 전한다.⁴⁴⁾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덩미가례시일기』 등 1847년(헌종 13) 헌종이 후궁으로 경빈 김씨를 맞이 한 혼례 관련 자료 5건(일기 2건/발기 3건), 『병인가례시 웃던 의디 불기』 등 1866년(고종 3) 고종이 중전 민씨를 맞이한 혼례 관련 발기 3건, 『임오정월 천만세동궁마마 관네 의디 불기』 등 1882년(고종 19) 왕세자 이척의 관·혼례 관련 자료 46건(의주 1건/홀기 4건/단자 1건/발기 40건), 『친영의』 등 1892년 (고종 29)~1893년(고종 30) 의화군 관·혼례 관련 자료 27건(의주 1건/홀기 1건/발기 25건), 『황태 즈비슈칙예궐홀기』 등 1906년(광무 10) 황태자 혼례 관련 자료 19건(책문 1건/홀기 8건/발기 10건),

44) 金奉佐,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51-108.

『황태자비관례홀기』 등 황태자비 윤씨 관례 관련 자료 7건(축사 1건/홀기 5건/발기 1건), 『영미정월 이십칠일 영친왕 관례시 의복 불기』 등 1907년(광무 11) 영친왕 관·혼례 관련 자료 8건(홀기 1건/발기 7건), 『남비친영홀기』 등 시기 미상의 자료 15건(의주 3건/홀기 12건)이 있다.

자료의 유형만 보더라도 책문, 축사, 단자, 의주, 홀기, 발기, 일기 등으로 모두 의례 거행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실무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실 의례와 관련된 한글 문헌들이 해당 의례의 실무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글 문헌의 제작 배경에 대한 연구는 의례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내인 등 왕실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전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 다만 개별 한글 문헌의 용도를 규명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황태자 가례와 관련된 한글 문헌의 경우 다른 관·혼례 자료와 달리 책문, 축사, 홀기, 발기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전하여 각기 다른 문헌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책문, 홀기, 발기 세 유형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례 축사의 경우 책문과 마찬가지로 관례 현장에서 담당 내인이 낭독하기 위한 대본 혹은 연습용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먼저 황태자비를 책봉하는 내용의 책문(冊文)을 살펴보자. 혼례 시의 왕비나 왕세자빈을 책봉하는 내용의 한글본 책문은 전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글본 책문은 금책의 제작 과정에서 나왔다. 궁내부특진관 민영규가 책문의 글을 지었고, 11월 20일(양력 1907년 1월 4일)에 중추원의장 민중묵이 서사관(書寫官)으로서 서식에 맞게 초도서(草圖書)로 작성하여 올렸다.⁴⁵⁾ 이를 바탕으로 12월 초3일(양력 1월 16일)에는 한자 및 한글 필사본 각 1건을 첩으로 만들었으며,⁴⁶⁾ 초10일(양력 1월 23일)에는 금책의 인출본을 첩으로 장황하여 황제와 황태자에게 각각 올렸다.⁴⁷⁾ 이 때 제작된 한자 및 한글 필사본과 탁인본의 소용 물품은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례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의례에 기록된 한글 필사본 책문은 고종 황제에게 올리기 위한 것으로 초록수주(草綠水紬) 표지에 홍수주(紅水紬)로 서배를 감싸고 백수주(白水紬)로 제첩을 꾸몄는데,⁴⁸⁾ 이는 붉은색 비단 표지의 현전본과는 다른 형태이다.

현전본의 용도에 대한 단서는 다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보니, 금책문(金冊文)을 제가 받은 뒤 등서(謄書)한 진서(眞書) 및 언서(諺書) 각 1건을 대내(大內)에 들여 그대로 여령(女伶)으로 하여금 외워서 익히도록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도록 일방(一房)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장에, ‘그대로 하라.’ 하였다.】⁴⁹⁾

45)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11月20日.

46)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12月初3日: 嘉禮都監都提調臣閔泳奎謹奏, “金冊文·金寶文眞謄書各一件, 作貼以入之意, 敢奏. 奉旨依奏

47) 『皇太子嘉禮都監儀軌』, 詔勅, 丙午12月初10日.

48)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 丙午7月初10日.

49)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 丙午7月28日: 取考謄錄, 則金冊文奏下之後, 謄出眞謄書各一件內入, 而仍令女伶誦習矣. 今亦依此舉行之意, 分付一房, 何如? 【圖章內依】

등록(謄錄)에 여령(女伶)을 위해 한자 및 한글 필사본 책문 각 1건을 제작한 전례(前例)가 기록되어 있으며, 책문의 글을 외워서 익히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혼례 관련 책문으로서는 황태자비 윤씨를 책봉하는 내용의 한글본이 유일하나, 이전의 왕비 및 왕세자빈을 책봉하는 내용의 책문 또한 한글본으로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또한 왕에게 올리는 어람용과 여령 등 실무를 담당하는 내인을 위한 용도로 별도 제작되었을 것이다. 여령을 위한 책문의 제작 물품에 대한 기록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외형은 알 수 없으나 현전본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황태자 가례에 동원된 여령들은 황태자비가 등장하는 의례에서 황태자 및 황태자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례에는 황태자비수책의, 봉영의, 동퇴연, 조현례에 동원된 여령들의 역할과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책문이 등장하는 ‘황태자비수책의’에 동원된 여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차비(傅姆差備) 1, 장서차비(掌書差備) 3, 수칙차비(守則差備) 2, 수규차비(守閨差備) 2, 궁인차비(宮人差備) 1, 사찬차비(司贊差備) 2, 전찬차비(典贊差備) 2, 명의대차비(命衣櫛差備) 2, 거안차비(舉案差備) 2, 금책차비(金冊差備) 2, 거안차비 2, 옥석차비(褥席差備) 1, 금보차비(金寶差備) 1, 거안차비 2, 옥석차비 1, 산선차비(緞扇差備) 2, 양산차비(陽傘差備) 1, 향로차비(香爐差備) 2, 향합차비(香盒差備) 2, 향꽃이차비(香串之差備) 2, 향안차비(香案差備) 2, 홍수방선차비(紅繡方扇) 2, 청수원선차비(靑繡圓扇差備) 2, 홍원선차비(紅圓扇差備) 2, 청방산차비(靑方緞差備) 2, 칠봉개차비(七鳳蓋差備) 1⁵⁰⁾

책보(冊寶)를 받는 의례에 동원된 여령들은 총 26가지의 일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일을 1~2명씩 맡아서 46명이 배정되었다. 이 중 책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여령은 금책차비 2명이다. 이는 금책을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차비로서 의식을 거행할 때 책문의 내용을 읽는 독책차비(讀冊差備)와는 다르다. 독책차비는 여령이 아니라 내인의 명단에서 찾을 수 있다. 발기【1609】에는 ‘독칙즈비 홍영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는 여령이 아니다. 즉, 황태자비 윤씨를 책봉하는 의례에서 책문을 읽는 역할은 내인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책차비의 역할은 의주등록과 홀기에 기록된 의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¹⁾

황태자비가 부모(傅姆)의 인도로 수책위(受冊位)에 나오면 장서(掌書)가 책함(冊函)을 취하여 독책안(讀冊案)에 올려두었다. 황태자비가 수칙의 청에 따라 네 번 절하고 꿇어 앉으면 독책여관(讀冊女官)이 책함을 열어 책을 읽고 끝나면 다시 책함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장서가 책함을 수칙에게 주면 수칙이 황태자비에게 바치고 황태자비는 수규에게 주었다. 이 때 독책여관은 의물로 제작된 금책을 들고 읽어야 했고, 예행연습으로 거행하는 습의(習儀) 때에는 ‘가금책(假金冊)’이라 하여 나무로 만든 금책⁵²⁾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므로 습의 전에 책문의 글을 외워 낭독하는

50)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丙午11月11日.

51)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 妃氏家受冊詣闕儀.

『황태자비수칙예결홀기(皇太子妃受冊詣闕笏記)』

연습을 미리 해두어야 했다. 연습용 대본으로 한자 및 한글로 필사된 책문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책 및 가금책에 표기된 한자를 익히기 위해 한자본이 필요했으며, 한자의 음가를 익히기 위해 한글본이 별도로 필요했다. 그리고 내인의 낭독 연습용 대본으로 사용하는 필사본 책문에는 짧은 호흡으로 천천히 끊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구두점을 찍었다. 이와 같이 의례를 거행할 때 낭독을 담당하는 내인들을 위해 만든 연습용 책문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그 전례를 밝힌 바 있다.⁵³⁾ 따라서 현전하는 한글 필사본 책문은 독책여관을 담당했던 내인 홍영이의 연습용 대본으로 볼 수 있다.

의례 진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료로 한글본 홀기(笏記)가 있는데, 혼례 8건, 관례 5건으로 총 13건이 현전한다. 혼례와 관련해서는 납채·문명, 납길, 납징, 고기, 책비, 동뢰의 육례 가운데 황태자비가 직접 참여한 책비와 동뢰에 관한 홀기가 있고, 후속 의례로 황태자비가 참여한 조현례, 관계례, 묘현례 등에 관한 홀기가 있다. 황태자비의 관례와 관련해서는 본 의식을 비롯하여 조알례, 전알·전배례 등 후속 의례에 관한 홀기가 있다. 모두 황태자비 윤씨가 직접 참여하는 의례에 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홀기는 일반적으로 의례 현장에서 주요 절차를 낭독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다. 따라서 한 손에 들기 편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본 홀기 또한 그 크기가 일정하여 휴대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용도는 앞서 살펴본 책문과 마찬가지로 그 장황 형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의례에 따르면 황태자 혼례와 관련하여 제작된 홀기는 총 130건이다. 작은 크기의 홀기 8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22건은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122건 중 황제를 위한 어람용 홀기 20건만 장황 형태가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황제를 위한 어람용 홀기는 표지감을 황색 화화주(禾花紬), 후협감 즉 서배는 홍색 화화주를 사용한 반면, 황태자 및 황태자비에게 올리는 홀기를 비롯한 각종 홀기들은 모두 홍색 화화주로 표지를 만들고 초록 화화주로 서배를 감쌌다.⁵⁴⁾ 각 홀기의 제작 소용 물품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三房儀軌, 稟目, 丙午11月初一日: 冊妃習儀時所用. 假金冊一件·假金寶一件·排案床二坐·讀案床二坐【以上別工作】. 差備忠贊衛十六人【侍從院】. 寶案一部【太僕司】. 紅紬袱一件·紅紬床巾四件·假褥席各四件·牽馬陪所着黃草笠二部·紅毛氈一部·鞍籠一部【以上三種太僕司】. 妃受冊習儀時所用. 假金冊一件·假金寶一件·讀案床二坐【別工作】·排案床二坐【尙方】·紅紬床巾四件·紅紬袱一件·假褥席各四件.

『皇太子嘉禮都監儀軌』, 別工作儀軌, 稟目, 丙午5月25日: 假寶一·假冊一·假圭一·假寶劍四·假雲劔二合所入. 木物【裁餘取用】. 漆次礪朱紅·石礪朱各四兩, 阿膠六兩, 明油五合.

53) 김봉좌, “綏嬪 朴氏 한글 冊文의 제작 배경과 특성,” 『震檀學報』 129(2017), 164-175.

54)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儀註所, 丙午7月初5日.

<표 7> 홀기의 제작 수량과 소용 물품

종류	수량	매 건당 소용 물품
御覽	20건	상품도런지 5장, 표지감 황화화주 길이6치·너비 4치 2편, 후협감 홍화화주 길이6치·너비1치 1편, 제목감 백화화주 길이5치·너비1치 1편
睿覽	20건	상품도런지 5장, 표지감 홍화화주 길이6치·너비 4치 2편, 후협감 초록화화주 길이6치·너비1치 1편, 제목감 백화화주 길이5치·너비1치 1편
皇太子妃	10건	
女官/女伶	20건	
內入 眞諺書	12건	
各差備官	40건	
小笏記_御覽	4건	설화지 5장, 황화화주 길이4치·너비2치5푼 2편, 협감 홍화화주 길이4치·너비1치 1편, 제목감 백화화주 길이2치·너비1치 1편
小笏記_睿覽	4건	설화지 5장, 홍화화주 길이4치·너비2치5푼 2편, 협감 초록화화주 길이4치·너비1치 1편, 제목감 백화화주 길이2치·너비1치 1편

현전하는 한글본 홀기는 황태자 이하에게 내린 홀기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비단 표지에 초록색 비단으로 서배를 감싼 형태이므로, 이들 중에서 그 사용자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내입(內入)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홀기들의 경우 ‘진언서(眞諺書)’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를 확정짓기는 어렵다. 또 크기를 비교해보면 의례 기록에는 길이 6치·너비 4치로 현대 단위로 세로 18.18cm·가로 12.12cm에 해당하는 반면,⁵⁵⁾ 현전본은 세로 29cm·가로 9.3cm 안팎으로, 기록보다 세로가 약 11cm가 길고 가로가 약 3cm가 짧다. 따라서 현전본은 의례 기록과 다른 크기로 제작되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용도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독책차비를 위한 책문 제작의 전례로 미루어본다면 이 또한 홀기의 낭독을 담당한 차비관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홀기의 낭독을 담당한 차비관은 황태자 가례에 참여한 내인들의 명단<발기【1609】>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홀기즈비 영완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내인 영완이가 홀기의 낭독을 담당했음을 가리킨다. 즉, 의례 현장에서 홀기의 절차 낭독을 담당한 영완이가 외워서 익히기 위한 용도로 한자 및 한글 필사본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전본에 부착된 붉은색 띠지나 짧은 간격의 구두점은 낭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전본이 의례 현장에서 직접 쓰였는지, 연습용 대본으로만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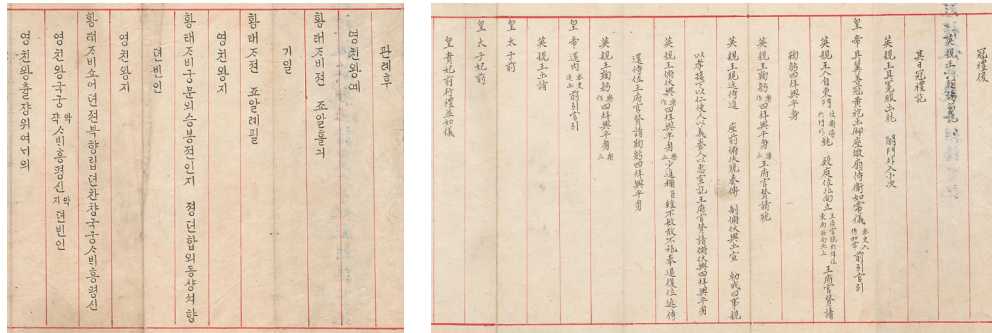
한글 필사본 홀기의 용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1907년(광무 11) 영친왕 관례를 위해 제작된 한자 및 한글본 홀기 각 1건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⁶⁾

55) 현대의 도량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1자(尺)=10치[寸]=30.303cm, 1치[寸]=10푼[分]=3.03cm, 1푼[分]=0.30cm

56) 『冠禮後 英親王 朝謁 笏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고문서 943)

『관례후 영친왕예황태즈비전 조알 홀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고문서 944)



<도 6> 영친왕 관례 홀기의 한글본(좌)과 한자본(우)

영친왕이 관례를 마친 뒤에 황제·황태자·황태자비·황귀비에게 절을 올리는 조알례에 관한 홀기이다. 한자본의 경우 영친왕이 황제에게 절을 올리면 황제가 경계의 말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말미에는 ‘영친왕이 황태자·황태자비·황귀비 앞에 나아가 행하는 의례도 이와 같다(英親王詣皇太子前·皇太子妃前·皇貴妃前行禮並如儀).’라고 하였다. 한글본은 「관례후 영친왕예황태자비전조알 홀기」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황태자비궁에 나아가 절을 올리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한자본에서 생략된 ‘행례(行禮)’로 볼 수 있다.

두 홀기의 용도는 그 내용에 명시된 실무자들의 명칭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한자본에는 ‘전인관(前引官)’, ‘근시(近侍)’, ‘왕부관(王府官)’이 나오는데, 모두 남성 내관(內官)이다. 이에 반해 한글본에는 ‘던빈(典賓)’, ‘던찬(典贊)’이 나오는데, 모두 여성 내인(內人)이다. 따라서 한글본 홀기는 내인들의 실무를 돕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인들의 실무를 돕기 위해 작성되는 대표적인 기록물로 발기(件記)가 있다. 한자 및 한글 필사본이 함께 전하여 대조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황태자 혼례와 관련해서는 한글본 10건과 한자본 3건, 황태자비 관례와 관련해서는 한글본과 한자본 각 1건으로, 총 15건이 전한다. 1882년(고종 19) 왕세자 혼례 때 제작된 발기가 58건 남아있는 데에 비하면 수량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복식, 기물, 음식, 차비관 등 다양한 주제의 발기가 전하여 두루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표 8> 황태자 가례 관련 발기의 표기 문자와 수량

내용구분	1882년 왕세자 혼례		1906년 황태자 혼례		1906년 황태자비 관례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복식	10건	8건	6건	1건	-	-
기물	2건	6건	2건	1건	-	-
음식	-	2건	1건	1건	-	1건
차비관	11건	19건	1건	-	1건	-
	23건	35건	10건	3건	1건	1건

한자 및 한글본 발기의 용도에 대해서는 1882년(고종 19) 왕세자 혼례 관련 발기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규명한 바 있는데,⁵⁷⁾ 황태자 가례 관련 발기의 제작 배경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발기에 기록된 복식, 기물, 음식 등은 모두 내인들의 소관으로, 각 물품의 제작 의뢰와 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한글로 그 내역을 작성함에 따라 나오게 된 기록물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상인과의 중개 역할을 위해 내관들이 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글본 발기와 동일한 내용의 한자본이 작성된다. 차비관의 명단이 열거된 발기들도 그 대상이 내관 혹은 내인에 해당하거나 각 차비관에게 내리는 상전(賞典)이 내인들 소관의 직물인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황실 내인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기의 제작과 관계된 직접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사례는 있다.

각종 예물단자감[禮物單子次] 저주지(楮注紙) 7장, 상궁·시녀 등 내인들에게 지급하는 물종을 등서(謄書)하기 위한 중백지(中白紙) 1권, 상백지(上白紙) 2권⁵⁸⁾

가례 때 각종 예물들의 내역을 기록하는 예물단자를 작성하기 위하여 저주지를 사용하였으며, 상궁 등 내인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내역을 베껴 쓰는 용도의 종으로 중급 및 상급의 백지를 사용한 사례이다. 현전하는 발기 가운데 두껍고 큰 형태의 종이가 다수 발견되는데, 발기를 작성하는 전용지로서 별도의 종이가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대한제국의 황태자 이척(李坫, 훗날의 純宗)이 황태자비 민씨를 잃은 뒤 1906년(광무 10)에 새로운 황태자비 윤씨를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한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06년 11월 24일(양력 1907년 1월 8일) 납채·문명을 시작으로 12월 11일(양력 1월 24일) 책비례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혼례를 올렸으며, 황태자비 윤씨는 12월 19일(양력 2월 1일) 11세의 나이로 관례를 올렸다. 두 의례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황태자가례도감의궤』와 『황태자가례의주등록』 등 총 33건이 현전하는데, 이 중 26건이 한글 필사본이다. 본고에서는 유독 한글로 표기된 문헌들이 다수 현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개별 문헌의 형태 및 내용을 통해 그 제작 배경과 용도를 살펴보았다.

한글 필사본은 황태자 혼례와 관련된 것 19건, 황태자비 윤씨의 관례와 관련된 것 7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모두 황태자비가 등장하는 의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책비례에서 황태자비에게 수여하는 금책과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한글 필사본 책문 1건을 비롯하여 황태자비

57) 김봉좌,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 『書誌學研究』 第65輯 (2016), 291-330.

58) 『皇太子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丙午10月20日.

가 거동하는 의식이 포함된 책비봉영의·동뢰의·조현의·황태자비회궁예황태자행례의·관례의·묘현례를 진행하는 내용의 한글본 홀기가 8건이 있다. 그리고 가례에 소용되는 복식, 기물, 음식과 관계된 발기 9건과 차비관에 대한 상전 내역을 기록한 발기 1건도 있다. 혼례에 뒤이어 거행된 황태자비의 관례와 관련된 한글 문헌으로는 관례 의식에서 읽는 축사 1건을 비롯하여 관례·조알례·행례·묘현례에 관한 홀기 5건 및 발기 1건이 있다. 책문·축사·홀기는 내인들의 의례 진행 및 낭독을 돕는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발기는 의례 전후 내인들이 각종 물품을 마련하기 위한 내역서로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황태자 가례 관련 한글 문헌은 황태자비 윤씨가 참여하는 의례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보조하는 실무자 내인들의 의례 진행 및 준비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한제국 시기를 포함하여 조선 왕실의 내인들과 관련하여 한글 문헌들이 다수 제작되었음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나, 개별 문헌의 특징과 제작 배경 등에 대한 고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왕실 의례 및 내인들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데다 관찬 사료에도 관련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족하게나마 현전하는 한글 문헌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조선 왕실 내명부의 한글 사용 범위를 확인하는 일 또한 그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大韓禮典』. 장서각 귀K2-2123.

『尙方司太子宫嘉禮教是時』. 장서각 K2-2728.

『皇太子嘉禮都監儀軌』. 규장각奎13179~13184, 13186.

『皇太子嘉禮儀註膳錄』. 장서각 K2-2737.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5.

『우리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 2004.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7: 복식발기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6.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 2000.

『조선왕실의 책』.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 2002.

『1882년 왕세자 관례 발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0.

강서영.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古宮文化』 5(2012). 46-82.

金奉佐.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 金奉佐. “순조대 진작 의례와 한글 기록물의 제작: 1827년 자경전진작의례(慈慶殿進爵儀禮)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3호(통권140호)(2015. 9). 151-178.
- 金奉佐.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 『書誌學研究』 第65輯(2016. 3). 291-330.
- 金奉佐. “綏嬪 朴氏 한글 冊文의 제작 배경과 특성.” 『震檀學報』 129(2017. 12). 153-179.
- 金奉佐.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의 제작 배경과 특성.”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3호(통권152)(2018. 9). 191-216.
- 김소현.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관례복식 연구.” 『服飾』 제60권 5호(2010. 6). 51-70.
-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 - 숙종 · 인현왕후 嘉禮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41(2007. 6). 79-139.
- 이민주. “장서각소장 왕실발기로 보는 순종 가례 복식 연구.” 『古文書研究』 48(2016. 2). 373-404.
- 이왕무. “1906년 순종의 嘉禮班次 연구.” 『藏書閣』 25(2011. 4). 164-189.
- 장병인.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인의례.” 『한국사연구』 161(2013. 6). 125-169.
- 장을연. “朝鮮時代 冊文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6.
- 주영하. “1882년 왕세자 척의 혼례 관련 왕실음식발기 연구.” 『古文書研究』 48(2016). 337-371.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Byung In. 2013. “The Marriage Ceremony of Crown Prince in the Choseon Period.”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61: 125-169.
- Jang, Eulyoun. 2016. *Investiture Books of Joseon Period*. Doctoral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Joo, Young Ha. 2016. “A Study on the Crown Prown Prince Chuck’s Wedding Cefemony related Royal Palace Cuisine Lists (Eumshik Bal’gi) in 1882.”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48: 337-371.
- Kang, Seo-young. 2012. “A Study on the Gungjung-bojagi of Late Joseon Period.” *The Culture of the National Palace*, 5: 46-82.
- Kim, Bong Jwa. 2011. *Joseon Han’geul Documents in Confucian Rituals*. Doctoral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Bong Jwa. 2015. “The Royal Banquet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Functions of Hangeul Records: Focusing on Royal Protocol for the Court Feast at Hall of the

- Mother's Good Fortune in 1827." *Korean Studies Quarterly*, 38(3): 151-178.
- Kim, Bong Jwa. 2016. "P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ecklists for Royal Ceremony – Focusing on Wedding Ceremony of the Crown Prince in 1882."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5: 291-330.
- Kim, Bong Jwa. 2017.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Hangeul Investiture Letters Conferred on Lady Park, the Royal Consort of Tranquility." *The Chin-Tan Hakpo*, 129: 153-179.
- Kim, Bong Jwa. 2018. "The Production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Hangeul Investiture Letters Conferring Additional Posthumous Titles on the Royalty of the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Quarterly*, 41(3): 191-216.
- Kim, Soh-Hyeon. 2010. "A Study of Ritual Costumes and Hairstyles used in the Coming-of-Age Ceremony for Royal Court Lad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5): 51-70.
- Lee, Min Joo. 2016. "Dress code study of King Sunjong's wedding costume based on list of the royal items "Balgi"."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48: 373-404.
- Lee, Wang-moo. 2011. "The Study of the Royal Wedding Procession in 1906." *Korean Journal of Jangseogak Royal Library*, 25: 164-189.
- Shim, Seung Koo. 2007. "A Progress and Characteristic of the Royal Family Wedding Ceremony in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41: 79-139.

